

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99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*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

* 이하 '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'은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약칭함

2.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의 내용

○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의 변경

* '2030 공원녹지기본계획'은 공원기본계획, 녹지기본계획, 도시녹화계획,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,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
○ 도시자연공원구역(이하 공원구역) 기본계획 정비의 내용

구분	현행	정비안
대상공원	도시자연공원에 한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	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시 공원구역 지정
GB 제외여부	도시자연공원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(481만㎡를 공원 으로 계획)	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,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
토지주 권익보호	(신설)	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함 가. 공원구역 내 재산세 적정수준 감면 나. 공원구역 내 토지의 보상 다.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

3. 정비사유

- 우리시는 2020. 6. 30.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종합 대책('18.4.29.)을 수립하였으며,
- 그 세부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토지는 도시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음
-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

4.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(안)

- 도시공원 91 km^2 중 약 76%(69 km^2)를 공원구역으로 변경

※ 계획도면(개략) 별첨 (실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)

5. 공청회 개최결과

- 개최일시 : 2019. 7. 18. 16:00~18:35 (신문공고 7.4.~7.17.)
- 개최장소 :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콘서트홀(강북구 번동)
- 참석인원 : 약 350명
- 주요의견

- 공청회장에서 발표 및 서면의견 중 찬성 의견은 1건이 있음
- 의견제시(제출)자 다수는 대부분 공원구역 지정에 반대
- 실효 회피의 수단으로 공원구역 지정은 현재판결 부정이라는 의견
- 공원구역 지정 후 전체 토지 보상 약속은 신뢰 곤란하다는 의견
- 정책 결정·집행 과정에 토지주들과 소통을 요구하는 의견 등

※ 기타 보상 및 비오톱 제도 폐지 등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직접 관계없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음

6. 접수 의견 반영 여부

-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안에 반영된 사항은 없음.
 - 다만, 제도개선 등 다음의 요구사항 등은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
 - 공원에서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은 전문가 자문 등 검토·논의 후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예정
 - 정책 결정과정에서 토지주들과 소통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, 시민들과 소통방안 지속 강구 예정 등
- ※ 접수 의견 별 검토결과 별첨

7. 관련부서 협의결과 : 의견 없음

8. 기 타

-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일정
 - 2019. 8월 : 의회의견 청취
 - 2019. 9월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결정·공고)
-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일정
 - 2019. 9월 :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
 - 2019. 11월 : 의회의견 청취
 - 2019. 12월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결정·공고)

붙임 : 1. 접수 의견 및 검토결과 1부.

2.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도(개략) 1부.

접수의견 및 검토결과

○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안에 대한 의견

구 분	접수의견 및 조치 계획 · 결과	의견 제출자
현장접수 (공청회)	<p>의견) 공원내 토지의 일부를 대지로 변환하여, 그 대지와 나머지 토지를 대토하는 방식 제안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도적 한계와 녹지훼손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. 	공 청 회 발 언 시 성 명 을 밝 히 지 않 음
	<p>의견)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토지주들과 충분한 소통 및 정보 제공 요청</p> <p>검토) 적극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를 포함한 주민들과 소통방안 지속적 강구 예정 	
	<p>의견) 공원구역으로 지정 후 사유지 전체 보상하겠다는 계획 신뢰 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원일 때도 보상 안 해주었는데, 보상의무가 없는 공원구역으로 지정 후 보상 약속 신뢰 곤란 · 17년간 5% 보상했는데, 전체를 보상하려면 300년 기다려야 함 · 사유지 보상 관련 필지, 보상시기 등을 구체화한 계획을 제시해야 보상하겠다는 약속 신뢰 및 공원구역 지정 동의 가능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유지 전체 보상은 2018. 4. 5. 기자설명회를 통하여 발표한 것으로 이는 시민과의 약속임 -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도 역시 서울시의 보상 의지의 표현임 	
	<p>의견) 실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음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38조의2 및 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25조 제1항의 법규정에 의한 것임 - 우리시 재정여건, 급변하는 기후 및 도시환경, 실효 후 녹지 보전과 지속적인 보상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임 	

(표 계속)

구분	접수의견 및 처리결과(조치계획)	의견 제출자
현장접수 (공청회)	<p>의견) 공원구역은 도시민에게 여가·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므로, 법률개정(재산세 감면) 대상이 아니고,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행정청의 직권감면 대상임</p> <p>검토) 수용근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도시민에게 여가,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직권감면 대상은 아님 	이○열
	<p>의견) 영구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공원구역 지정 절대 반대</p> <p>검토) 수용근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38조의2 및 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임 - 우리시 재정여건, 급변하는 기후 및 도시환경, 실효 후 녹지 보전과 지속적인 보상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임 	성○희 외51 (성명 미표명자 미계상)
	<p>의견) 수목장을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</p> <p>검토) 적극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가 자문 등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 등 노력 예정 	정○영
서면접수	<p>의견) 서울의 공원은 사실상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된 공원으로 보아야 함</p> <p>검토) 수용근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 인가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의 조치가 있어야만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(국토부 도시정책과-5945, '17.6.19.) 	이○열
	<p>의견) 공원구역 결정 전 보상 혹은 공원해제 요청. 공원확보 의지에 신뢰를 보이려면 보상의지도 보여주어야 할 것</p> <p>검토) 수용근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시 재정여건, 급변하는 기후 및 도시환경, 실효 후 녹지 보전과 지속적인 보상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임 - 다만,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청구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에 노력 예정 	신○성 외52

(표 계속)

구 분	접수의견 및 처리결과(조치계획)	의견 제출자
서면접수	<p>의견) 어떤 토지는 보상을 해주고, 어떤 토지는 공원구역으로 결정하여 영구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시 재정형편상 선택적 보상은 불가피 -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후에도 매수청구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에 노력 예정 	권○준 외33
	<p>의견) 보상받은 사람은 세금에서 해방되고, 보상 못받고 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영구히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불공평(재산세 50% 감면은 대책이 될 수 없음)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, 현행 재산세 50% 사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, - 관련 법률 개정 도는 시세 감면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감면혜택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	김○권
	<p>의견)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계획을 토지주들에게 공개 요청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확정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검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며, - 내부 검토과정이 완료되면,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 	이○환 외32
	<p>의견) 근린공원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시 재정여건, 급변하는 기후 및 도시환경, 실효 후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보상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임 -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해 나갈 예정 	신○성 외52
	<p>의견) 토지보상이 미루어지는 기간에 상응하는 피해 보전이 있어야 먼저 보상 받은 토지주들과 비교하여 공평할 것임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시는 보상 우선순위 선정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고 있음 - 보상 시점의 차이로 인한 피해는 인정 곤란 	김○권 외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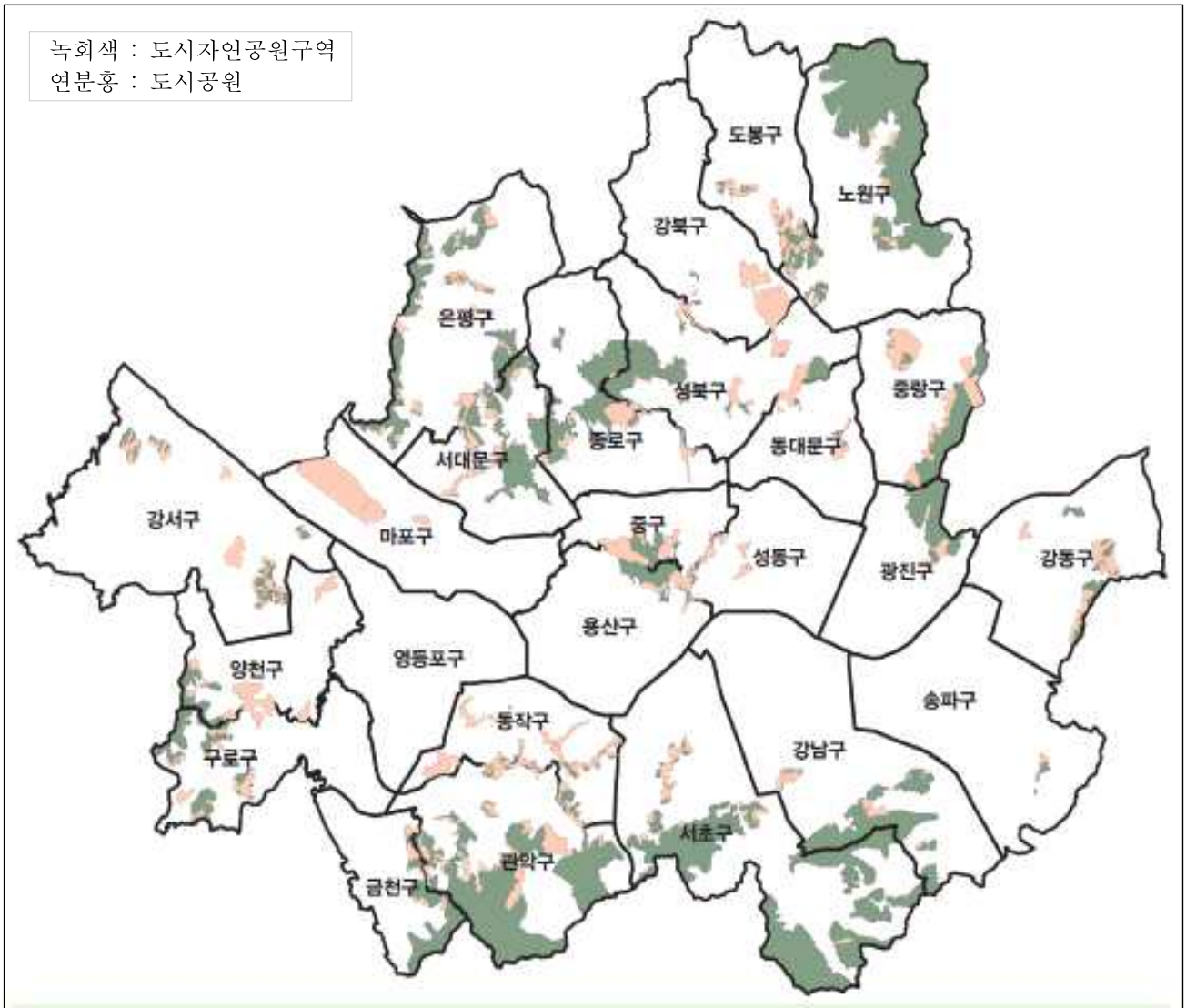
○ 보상, 비오톱 등 관련 비직접적 의견

구 분	접수의견 및 처리결과(조치계획)	의견 제출자
공청회 접수의견	<p>의견) 참나선원(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낙성대 지구) 보상 반대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로서 기 집행 완료된 도시공원의 중심부에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거나 공원해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- 다만, 최근 열람공고 의견 접수(2019.7.31.)되어 현재 검토 중 	미상 (공청회)
	<p>의견) 까치산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제안에 대한 불허한 사유 공개 요청</p> <p>검토) 기 처리된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까치산근린공원 특례사업 제안 미수용 사유는 2016년 당시 제안자에게 기 회신되었음 	미상 (공청회)
서면접수	<p>의견) 까치산근린공원의 경우 일부(17%)만 보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, 전체를 보상해 주든가 공원에서 해제 요청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상은 필지 기준이 아닌 현황과 이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기에, 일부(17%) 분할보상은 불가피 - 대상필지의 전체 보상 혹은 해제는 수용 곤란 	신○성 외53
	<p>의견) 토지의 일부만을 보상하여 나머지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부분 보상에 반대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상 대상지는 필지 기준이 아닌 현황과 이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기에, 일부 분할보상은 불가피함 	장○임 외52

(표 계속)

구 분	접수의견 및 처리결과(조치계획)	의견 제출자
	<p>의견)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비오톱 제도 폐지 요구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작성되며 도시 생태현황을 나타내는 공간정보로서 토지이용을 직접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 - 개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경사도, 입목축적도와 같은 허가기준 중의 하나이며,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 관리를 위하여 유지 필요 	<p>신○성 외 57</p>
	<p>의견) 공청회 관련 개별적 공지가 없었고, 공무원과 경비인력이 공청회장 상당수를 채워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, 토지주들의 ‘알 권리’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공청회는 무효임</p> <p>검토) 수용곤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공청회는 14일 이상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모든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였음(개별적 공지는 법령상 규정 없음) - 경비인력은 만일의 경우,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였음 	<p>성○희 외 51</p>

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도(개략)



※ 본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도(개략)는 배치계획을 개념적 형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략도면으로, 실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시에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사·분석 및 평가에 의하므로, 본 계획도와 달라질 수 있음